

□ 주요내용

가. 식품 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의 인정대상 중 식품원료 추가(신설)

- (1) 국내에서 새로이 식품의 원료로 사용
하고자 하는 농·축·수산물 및 미생
물 등
- (2) 식품으로 사용 가능한 원료를 추출
· 농축·분리·배양 등의 방법으로
얻은 신규물질

나. 인정 검토 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로 설정

다. 기타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신청서, 인정서, 및 인정사항 변경신청
서 와 작성요령 신설(내용 생략)

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3년으로 설정

※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217호, 2009. 8. 5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정서저해 식품 등의 모양, 도안 또는 문구 등을 정하여 판매 등을 금지되게 함으로써 건전한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판매환경을 마련하여 어린이의 바른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가. 정서저해 식품 등의 모양, 도안 또는
문구 등을 정하여 판매 등을 금지함
(안 제2조)

- (1)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정서저해 식품이 유통될 우려가 있으
므로 이들 제품에 대한 판매 등 금지

가 필요함.

- (2) 정서저해 식품의 모양, 도안 또는
문구를 규정하여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유통을 금지함.
- (3) 어린이 기호식품의 건전한 유통 환경
을 유도하여 건강한 어린이의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나.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3년으로 설정(안 제3조)

*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227호, 2009. 8. 13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부식품에 해양심층수의 사용허용, 떡류의 정의 확대, 김치 및 튀김식품 등의 보존 및 유통기준 개선, 식품제형 및 식염의 범위 확대, 가공두부의 정의 개선을 통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실에 부합된 합리적인 기준이 되도록 하며, 국내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물질에 대해 선진외국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축산식품(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고기)의 중금속(납, 카드뮴) 기준, 훈제어육가공식품 중 벤조페렌의 잔류허용기준과 같은 유해물질의 기준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가. 해양심층수 및 관련 제품을 식품제조 용수로 사용확대(안 제2, 3, 2))

하여 성형 후 익힌 것으로 정의 되어 있어, 감자가루 등 전분 등으로 확대하고 익히지 않은 반가공제품을 포함 할 수 있도록 개정 필요

- (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되는 관련제품에 대한 식품제조용수 사용 확대
- (2) 해양심층수, 농축수 등 제품을 김치 절임, 두부제조용수, 절임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3) 해양심층수 및 식품산업의 활성화

- (2) 떡류의 주원료 및 반가공품 포함할 수 있도록 정의 개정
- (3) 합리적인 식품유형 분류가능

나. 떡류의 식품유형 정의 확대(안 제5, 2, 1) 및 2), (2))

다. 김치, 튀김식품 등 보존 및 유통기준 개선(안 제2, 6, 7))

- (1) 떡류는 쌀가루 등 곡분만을 주원료로

- (1) 냉장보관이 필요하지 아니한 식품임에도 보존기준 적용으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
- (2) 살균 김치 및 발효음료, 튀김식품 등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